

# 군산신흥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2.12.26. 관리 제2975호

제1차 개정 2008. 03. 05.

제2차 개정 2011. 06. 27.

제3차 개정 2017. 02. 22.

제4차 개정 2019. 07. 19.

제5차 개정 2020. 05. 22.

제7차 개정 2022. 04. 13.

제8차 개정 2023. 02. 10.

제9차 개정 2023. 04. 2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교는 군산신흥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129번지(나운동 45-4번지)에 둔다.<개정 2019. 7. 19.>

##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2.>

**제5조(학기)**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당해 연도의 형편에 따라 학교장이 융통성 있게 학기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제6조(휴업일 등)**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22.>

1. 국경일
2. 관공서의 공휴일
3. 개교기념일 : 5월 1일, 5월 9일 <개정 2019. 7. 19.>
4. 여름방학
5. 겨울방학
6. 학년말 방학
7.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업일
8.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3. 4. 27.>

③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2., 2023. 4. 27.>

④ <삭제 2017.2.22.>

⑤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고, 사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항 분리, 신설 2023.4.27.>

###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 학급배정 기준에 의하여 학급을 편성 운영한다.

**제8조(학급수 및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제4장 교과과정 · 수업일수 및 평가**

**제9조(교육과정)** 학교 · 학년 · 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 · 운영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개정 2017. 2. 22., 2023. 4. 27.>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7. 2. 22., 2023. 4. 27.>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4. 27.>

③ 재취학 · 편입 · 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4. 27.>

**제11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본교와 인근학교 또는 학년(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학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3. 4. 27.>

④ 삭제 <2023. 4. 27.>

⑤ 삭제 <2023. 4. 27.>

⑥ 삭제 <2023. 4. 27.>

⑦ 삭제 <2023. 4. 27.>

⑧ 학교의 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⑨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제목 및 전문개정 2017.2.22.]

**제12조(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장은 학생의 희망과 보호

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교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2. 9., 2023. 4. 27.>

② 개인 교환학습은 1개월(4주) 이내, 단체 교환학습은 2주 이내의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③ 교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 2. 9.>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 간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 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9., 2023. 4. 27.>

⑤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출결 관리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1.2.9., 이동 및 개정 2023.4.27.>

[본조신설 2023. 4. 27.]

**제13조(평가)**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14조(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 ① ‘개별화교육’이란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정의)

②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개별화 교육)

③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개별화 교육)

[본조신설 2023. 4. 27.]

## **제5장 입학, 재취학, 전학, 편입학, 수료 및 졸업**

**제15조(입학 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2.>

**제16조(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4. 27.>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 내 아동으로서 나운2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개정 2023. 4. 27.>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제목 및 전문개정 2017.2.22.]

**제17조(만 5세의 조기입학)** ①, ②, ③, ④, ⑤ <삭제 2011.06.27.>

⑥ 조기 입학은 본교의 학생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7.>

⑦ 만 5세아가 입학허용을 받은 후 3월 1개월간 지도 결과 부적응아로

관찰될 경우 입학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동 2023.4.27.>

⑧ 입학허용 취소는 1학년 학급담임의 관찰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1. 교육감이 고지한 질병,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발육부진
2. 인정유학(취학 전 아동)
3. 기타 학교장이 유예·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④ 유예 및 면제 시기는 입학할 학생은 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2월 말로 하고, 재학생은 장기간 수업 결손 사유 발생 시의 학기 중에 한다.

⑤ 학교의 장이 아동의 질병 외에 행방불명, 성장부진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의사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나 보호자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전면 개정 2023.4.27.]

**제19조(미입학 아동의 통보)**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필한 아동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동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0조(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의 장은 본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내에 입학·재취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 4. 27.>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보호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④ 학교의 장은 본교에 취학할 예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본조 신설 2017.2.22.]

**제21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4. 27.>

1.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삭제

1. 삭제

2. 본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나운2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본교 소재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신설 2022. 4. 13.>

[본조 신설 2017.2.22., 개정 2023.4.27.]

**제22조(재취학)** ① 각종 사유에 따라 유예, 면제, 정원 외로 관리된 학생은 유예한 학년에 재취학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2.>

② 학교의 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제목 개정 2022.4.13.]

**제23조(전학·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3. 4. 27.>

② <삭제 2023.4.27.>

③ <삭제 2023.4.27.>

**제24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제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개정 2023. 4. 27.>

② 귀국학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가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27.>

③ 학년은 외국에서 수학한 전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학력인정에대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제목 개정 2022.4.13.]

**제25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과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각 학년의 수료와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졸업장)**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학생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본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하여 소정의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이수인정을 받은 학생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 졸업 대상자의 선정 및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4. 27.>

**제28조(조기 교육 대상)** <삭제 2023.4.27.>

**제29조(조기이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교과목 선정)** <삭제 2023.4.27.>

**제30조(학습운영방법)** <삭제 2023.4.27.>

**제31조(교과목 조기이수 인정 평가 대상자 선정)** <삭제 2023.4.27.>

**제32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조기졸업, 조기진학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27.>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조기졸업, 조기진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 2. 22.>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신설 2022. 4. 13.>

**제33조(교과목별 조기이수 평가 도구)** <삭제 2023.4.27.>

**제34조(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수준)** <삭제 2023.4.27.>

**제35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삭제 2023.4.27.>

**제3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삭제 2023.4.27.>

**제37조(조기진급자의 환원 조치)** <삭제 2023.4.27.>

## 제7장 수익자부담경비 등 기타비용의 징수

**제38조(기타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체험학습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신설 2023. 4. 27.>

## 제8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39조(학교생활규정)**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운영한다. <신설 2023. 4. 27.>

**제40조(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학생, 근면성이 뛰어난 학생,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여러 분야에서 특기를 발휘하는 학생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② 학생 시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4. 27.>

③ 삭제 <2023.4.27.>

**제41조(학생훈육)**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

25. 삭제

**제42조(학생징계)** ① 학교장은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규정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② 기타 세부 사항은 본교 학교생활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 4. 27.>

##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3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 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4.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5.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외부 인사(변호사 등 전문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0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이하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5.22.]

## **제10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44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4. 27.>

② 삭제 <2023. 4. 27.>

**제45조(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신설 2023. 4. 27.>

## **제11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6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28. 삭제

29. 삭제

② 학교의 장은 전교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어린이회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신설 2023. 4. 27.>

## **제12장 학칙 개정 절차**

**제47조(학칙개정)** ① 학칙의 개정은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1. 6. 27., 2023.4.27.>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 6. 27.>

③ 제 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 6. 27.>

## **제13장 기타**

**제48조(기타)** 본교의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위 법령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른다.

나. 삭제

다. 삭제